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7. 16.	규칙	제1330호
일부개정	2013. 11. 20.	규칙	제1372호
일부개정	2016. 11. 24.	규칙	제1460호
일부개정	2017. 11. 24.	규칙	제1489호
일부개정	2019. 9. 18.	규칙	제1541호(안양시 규칙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규칙)
일부개정	2022. 11. 17.	규칙	제16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4.>

1. “직장운동경기부”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하고, 직장부와 복합부로 구분한다.
2. “직장부”란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하며, “복합부”란 특정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보수”란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연간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제외한다.
5. “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및 대회성적에 따른 포상금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1. 24., 2017. 11.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감사 또는 인사업무 담당과장
2. 안양시 체육회 사무국장
3. 삭제 <2016. 11. 24.>
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5. 체육관련 업무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및 체육 단체 직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9. 18.>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1. 단원의 임용 및 등급 심의
2. 단원의 징계 의결
3. 우수선수 영입에 관한 사항
4.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정원 심의
5.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정 2017. 11. 24.>

제6조(종목 및 단원의 정수) 조례 제28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단원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1. 24.>

제7조(임용) ① 지도자의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선수의 임용은 지도자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제8조(임용서류)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지도자의 경우에는 자격증)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6. 가족관계등록부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범죄경력조회서 1부

제9조(임용자격 및 평가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단원의 임용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자는 별표 3의 지도자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계약을 할 수 있으며, 평가는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7. 11. 24.>

③ 선수를 신규 채용 또는 재계약 시 매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훈련평가, 최근 1년간 경기성적, 기여도, 감독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책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11. 24., 2017. 11. 24.>

④ 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인사기록) ①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선수 입단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를 체결하고, 지도자 입단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2022. 11. 17.>

② 단원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제12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제13조(우수선수의 영입) ①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를 제외한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선수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4.>

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1. 24.>

제14조(단원의 보수)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선수의 연봉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단원의 연봉 산정표는 별표 5와 같다.
2. 보수는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에 지급한다.
3.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의 국가대표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4. 지도자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되 감독은 월 40만원, 코치는 월 30

만원을 지급한다.

5. 시장은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퇴직금)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직장이탈 금지: 단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비밀엄수 의무: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무: 단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8. 집단행위 금지: 단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로 인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코치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7.>

제18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단장이,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제19조(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또는 대회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②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7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③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④ 단원(복합부 일반종목 단원을 제외한다)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운동용품비 및 차량유지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신분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1조(당연퇴직)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② 단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안 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22조(직권면직)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운동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감원이 된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3조(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따라서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정년) ①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0., 2016. 11. 24.>

1. 지도자: 60세

2. 선 수: 35세(다만, 직장부에 한함)

② 경기실적 및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4.>

③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제26조(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2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에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건축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징계에 따라 파면·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8조(상해보험) 시장은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때 비용은 시 예산으로 한다.

제29조(선수단 숙소) 시장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제4장 보칙

제30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자는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자는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7.]

제31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 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11. 17.]

제32조(이적 동의) ① 시장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7.]

제33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7. 11. 24.>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4.>

1. 단원의 위·해촉 관리
2. 단원의 복무 및 훈련, 경기출전 관리
3. 단원의 우수선수 영입
4. 단원이 사용하는 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조례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2. 11. 17.]

제3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2. 11.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직장운동부 단원은 이 규칙에 따라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부칙 <2013. 11. 20.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4. 규칙 제1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4. 규칙 제1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1호, 안양시 규칙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2. 11. 17. 규칙 제1623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 11. 24.>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및 단원의 정수(제6조 관련)

종목	계	직장부			복합부		비고
		육상	수영	롤러	전략종목	일반종목	
단원	65명 이내	35명 이내			30명 이내		지도자(감독,코치)를 포함한 인원임

- 직장부의 종목별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운영하며, 종목별로 감독 1명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코치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복합부 전략종목 및 일반종목의 세부종목은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종목 중에서 선정하며, 종목별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운영한다.
 - 전략종목은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1년 이내로 운영하며, 코치 1명을 둘 수 있다.
 - 일반종목은 단기간 훈련이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 이내로 운용하며, 지도자를 두지 않는다.
- 단원의 정수 범위에서 직장부와 복합부의 선수인원은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7. 11. 24.>

단원의 임용 자격요건(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 격 요 건
지도자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지도자 자격 1·2급 소지자로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 및 일반 실업팀 감독, 코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가대표 경력이 있거나 또는 국가대표 코치 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 (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고졸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중·고·대학, 일반실업팀 감독, 코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2년 이상의 선수 경력자로서 직장부 선수는 최근 1년간 전국단위 규모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복합부 선수는 최근 1년간 도단위 규모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직장부 및 복합부 선수의 재계약 시 입상성적이 없더라도 품행이 단정하고 경기력 향상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은 한 차례만 한다.) 안양시 관내의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
우수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기성적이나 발전가능성이 우수한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별표 3] <개정 2013. 11. 20.>

지도자 평가표(제9조제2항 관련)

항 목	배 점 기 준	평 가 점 수	착 안 사 항		비 고
			직장부	복합부	
계					
1. 지도 능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 통솔력 (15점) 팀 경기력 향상 여부 (15점) 	상(15~14), 중(13~10), 하(10이하)	평가단 평가 전년도 성적비교		
2. 팀 성 적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대회 성적(10점) 	상(10), 중(7), 하(5)	상(10) : 은1 이상 중 (7) : 동1 이상 하 (5) : 이하	상(10) : 동1 이상 하 (5) :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체전 성적(20점) 	상(20), 중(15), 하(10)	상(20) : 금2 이상 중(15) : 금1 이상 하(10) : 이하	상(20) : 금1 이상 중(15) : 은1 이상 하(10) :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대회 성적(10점) 	상(10), 중(7), 하(5)	상(10) : 금3 이상 중 (7) : 금2 이상 하 (5) : 금1 이하	상(10) : 금1 이상 중 (7) : 은1 이상 하 (5) :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 단위급 성적(10점) 	상(10), 중(7), 하(5)	상(10) : 금5 이상 중 (7) : 금4 이상 하 (5) : 금3 이하	상(10) : 금1 이상 중 (7) : 은1 이상 하 (5) : 이하	
3. 지도자 평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 평판 (20점) 	상(20~16), 중(15~11), 하(10이하)	상벌사항 반영		

가. 연임은 총점 60점 이상으로 한다.

나. 팀 성적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성적을 평가한다.

[별표 4] <개정 2022. 11. 17.>

선수의 연봉등급 산정 기준(제14조제1호 관련)

1. 등급별 점수기준

등 급 별	점 수 기 준
특 급	85점 이상
A 급	70점 이상
B 급	45점 이상
C 급	45점 미만

2. 등급산정 기준표

구분	등급	순위	총점	훈련평가 (30점)			경기 성적 (40점)	팀 기여도 (20점)	감독 평가 (10점)	비고
				성실도	발전도	이해도				
점수배점			100점	10	10	10	40	20	10	
종 목	○○○	특	1							
	○○○	A	2							
	○○○	B	3							

가. 점수배점 기준

- 1) 훈련평가 : 각 항목별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20%(5점 이하)
- 2) 경기성적: 성적별 점수기준표에 따라 배점(상한점 40점)
- 3) 팀기여도 : 상위 30%(20~16점), 중위 50%(15~11점), 하위20%(10점 이하)
- 4) 감독평가: 상위 30%(10~9점), 중위 50%(8~6점), 하위20%(5점 이하)

※ 훈련평가, 팀기여도, 감독평가 항목의 퍼센트 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배정하고, 팀별 3명 미만은 중위점수 전원 배정하며, 신규 영입선수는 단장의 재량에 따라 기여도 점수 별도배정

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하여는 2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롤러는 10점 가산(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 한정함)

3. 성적별 점수기준표

(단위: 점)

구 분		금	은	동	비고		
국제대회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전종목	50	40	30		
		롤러	30	25	20		
	그밖의 대회	20개국 이상 참가대회	전종목	30	25	20	
			롤러	25	20	15	
		10개국 이상 20개국 미만 참가대회	전종목	20	16	12	
			10개국 미만 참가대회	전종목	10	7	5
전국대회	전국체육대회	전종목	20	15	10		
	그밖의 대회	전종목	10	7	5		
경기도체육대회		전종목	10	7	5		

1. 육상 및 롤러종목 마라톤은 1~2위는 금, 3~4위는 은, 5~6위는 동으로 산정한다.
2. 복합부의 전국체육대회 경기성적 점수는 단장의 재량으로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2. 11. 17.>

단원의 연봉 산정표(제14조제1호 관련)

1. 직장부

지도자(감독)		선 수			
근무년수	보 수 액	등 급	점 수	보 수 액	
1	일반직 공무원 6급 5호봉	특 급	가	90점이상	57,150천원
2	6호봉		나	85점이상	51,440천원
3	7호봉	A급	가	80점이상	44,580천원
4	8호봉		나	75점이상	42,290천원
5	9호봉		다	70점이상	38,860천원
6	10호봉	B급	가	60점이상	35,430천원
7	11호봉		나	52점이상	33,150천원
8	12호봉		다	45점이상	30,860천원
9	13호봉	C급	가	35점이상	28,580천원
10	14호봉		나	30점이상	26,290천원
11	15호봉		다	30점미만	24,000천원
12	16호봉	1) 코치는 선수연봉액 A급다등급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7,150천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안양시 선수 선발일 기준 1년 이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② 안양시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13	17호봉				
14	18호봉				
15	19호봉				
16	20호봉				
17	21호봉				
18	22호봉				
19	23호봉				
20	24호봉				
21	25호봉				
22	26호봉				
23	27호봉				
24	28호봉				
25	29호봉				
26	30호봉				
27	31호봉				
28	32호봉				

2. 복합부

- 1) 코치는 선수연봉액 A급다등급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2) 전략종목의 선수는 단원의 연봉 산정표를 적용한다.
- 3) 일반종목 선수는 월 2,500천원 이하로 한다.

[별표 6] <개정 2022. 11. 17.>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제5호 관련)

(단위:천 원)

구 분		금	은	동	비고		
국제대회	올림픽	전종목	20,000	17,000	15,000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전종목	10,000	7,000	5,000		
	그밖의 대회	20개국 이상 참가대회	전종목	3,000	2,400	2,000	
		10개국 이상 20개국 미만 참가대회	전종목	1,500	1,200	1,000	
		10개국 미만 참가대회	전종목	600	400	300	
전국대회	전국체육대회	전종목	1,000	800	600		
	그밖의 대회	전종목	500	300	200		

1.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여러 종목에 입상한 경우에는 상위입상 2개 종목에 대하여만 100%를 지급하며, 감독은 해당종목 선수 중 최고수혜 선수와 동일한 금액을, 코치는 70%를 지급한다. 다만, 단체전 계주경기 입상자는 입상 포상금 기준의 70%만 지급한다.
2. 육상종목 마라톤과 롤러종목 마라톤의 경우 1~2위는 금, 3~4위는 은, 5~6위는 동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종목의 경우에는 한국 신기록 수립시 5백만원, 아시아 신기록 수립 시 10백만원, 세계 신기록 수립시 20백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대회당 한 차례에 한정한다)

[별표 7] <개정 2022. 11. 17.>

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직장부(1일 기준)				복합부(전락종목) (1월 기준)	비 고
	계	식 비	간식비	목욕비		
훈련비	34,000	24,000	5,000	5,000	400,000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기간의 일수는 제외한다.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는 별표 7의 훈련비(직장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숙박비, 일비, 왕복교통비 등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의 6급 이하를 적용하고, 시설사용료는 실비를 지급한다.

[별표 9]

징계양정 기준(제26조제2항 관련)

구 분	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고경고의가 있는 경우	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고경과실인 경우	규정위반의 도가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위반	파면·해임	감봉	감봉	견책
품위 유지의 위반	파면·해임	감봉	감봉	견책
복종의무위반	파면	정직·감봉	정직·감봉	견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위반	파면·해임	감봉	감봉	견책
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해임	감봉	감봉	견책
비밀엄수 의무위반	파면	정직	정직	감봉·견책
청렴의무위반	파면	정직	정직	감봉·견책
집단행위금지위반	파면·해임	감봉	감봉	견책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1. 24.>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 최 일 시	
2. 출 석 위 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그 밖의 주요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1. 24.>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본인은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만일 입단 후에 기재사항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때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한 글		성 별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최종학력	학교(과 년)졸업, 졸업예정			
경 력	근 무 기 간		직 위	근 무 처
	부 터	까 지		
주요경기실적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1. 17.>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¹⁾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1)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제4조(선수의 담당업무 및 활동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무장소 및 근로·휴게시간) ① 근무지(근무장소) :

- ②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00:00~00:00까지로 한다.
- ③ 휴게시간은 00:00~00:00(0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 ④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⑥ 업무의 특성상 출장 및 기타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⑦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⑧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내에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위 제5항을 이유로 하여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⑧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⑨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수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검사와 치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선수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선수가 그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원)과 계약금(한글) 원(000,000,000원)으로 구성된 일급(한글) 원(000,00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 00 일, (한글) 원(000,000,000원)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1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의 선수의 초상 등을 방송, 보도, 광고에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고, 선수는 이에 동의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휴가) ① 선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

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선수가 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질병, 부상을 당하여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제9조에서 정한 기본연봉액의 범위 내에서 선수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6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19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대표자	안양시장 (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중전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이동 2022. 11. 17.>

서 약 서

본인은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6.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직장운동부 임용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중전 별지 제5호서식에서 이동 2022. 11. 17.>

재 직 증 명 서(제12조제1항 관련)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안양시청(직장운동부)			
	직위,직급	(선수)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양 시 장</p>					

[별지 제7호서식] <중전 별지 제6호서식에서 이동 2022. 11. 17.>

경 력 증 명 서(제12조제2항 관련)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 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직 급	직 위	근 무 부 서	
	부 터	까 지				
근 무 연 한			최 종 직 또 는 직 급			
퇴 직 사 유						
상 벌 사 항	포 상			징 계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연 월 일	종 류	시 행 청
직 위 해 제	연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상기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중전 별지 제7호서식에서 이동 2022. 11. 17.>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부)

				감독 (코치)	팀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훈련시간	장 소	훈 련 내 용		비 고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2. 11. 17.>

이 적 동 의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 소 속	안양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직 위	(선수)		
이적단체				
<p>위 선수의 () 이적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안 양 시 장</p>				